

도서 및 정기간행물통계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tatistics
relating to Book production and Periodicals

1964년 11월 19일
제 1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도서 및 정기간행물통계의 국제표준화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tatistics
relating to Book production and Periodicals

1964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 13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유네스코 헌장 제 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관내의 제 문제를 국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며 또한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유네스코 헌장 제 8조가 각 가입국은 총회가 결정하는 양식으로 교육, 과학, 문화 활동 및 기관에 관한 자국의 법령, 규칙 및 통계에 대하여 또 제 4조의 제 4 항에 규정하는 권고 및 협약에 의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기관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출판에 있어서의 통계를 수집 및 통보하는 책임을 갖는 국내기관이 이 통계의 국제적 비교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의, 분류 및 제표양식의 문제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따를 것이 극히 바람직하다고 확신하며,

이 회기의 의제 15.3.2로서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출간에 대한 통계의 국제적인 표준화에 관한 제안을 심의하며,

제 12차 총회에서 이들의 제안은 가입국에 대한 권고의 형식을 취한 국제적 문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 바,

1964년 11월 9일에 본 권고를 채택한다.

총회는 국제적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가입국이 국내법 기타 형식에 따라 이 권고에 정하는 기준 및 원칙을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영역 내에서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도서 및 정기간행물에 대한 분류 및 제표 양식에 관한 다음의 규정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에 대하여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통계를 수집 및 통보할 책임을 갖는 당국 및 기관에 이 권고를 주지시킬 것을 권고한다.

총회는 가입국에 대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총회가 정하는 기간 및 양식에 의하여 총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I. 범위 및 일반 정의

1. 본 권고에서 말하는 통계는 어느 한 나라에서 발행되어 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인쇄된 정기간행물 및 비정기간행물로서 보통 제국의 국내 출판물에 기재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2. 다음 출판물은 본 권고에서 말하는 통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가) 광고의 목적으로 발행된 출판물로서 문학적 또는 학술적 설명이 부수적이며 또한 무료로 배부되는 것:

- (1) 산업용 카탈로그, 안내서 및 다른 양식의 상업용, 공업용 및 관광용의 광고류;
- (2) 공업용 또는 상업용의 어느 부문에 있어서의 활동 또는 기술의 진보에 대하여 말하고 또 발행하는 자가 자기의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주의를 끄는 출판물.

(나) 다음 종류에 속하는 출판물로서 일시적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 (1) 시간표, 정가표, 전화부 등;

- (2) 연예, 전람회, 견본시 등의 프로그램;
- (3) 법인의 정관 및 사업보고, 회사의 지령, 회장 등;
- (4) 캘린더, 역본 등.
- (다) 다음 종류에 속하는 출판물로서 문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 (1) 음악작품(악보 및 악보집)으로 악보가 문장보다 중요한 것;
 - (2) 지도서 이외의 지도 및 해도, 이를테면 천문도, 수로도, 지세도, 궤도, 도로도, 지질조사도 및 지형도;
- 3. 본 권고에서 말하는 통계를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의 정의가 쓰이는 것으로 한다:
 - (가) 각 권이 한번에 또는 간격을 두고 출판되며 또한 일반적으로 그 수가 미리 확정되고 있는 출판물은 비정기 간행물로 간주된다.
 - (나) 동일 표제 아래 규칙적 또는 불규칙적 간격을 두고 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판되는 시리즈의 1호를 이룬 출판물은 시리즈 각 호에 일련번호가 부기되어 또는 각 호에 일부가 붙여졌을 때에는 정기간행물로 간주된다.
 - (다) 인쇄라고 하는 용어는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기계인쇄에 의한 복사를 포함한다.
 - (라) 출판물은 출판물 통계가 작성되는 나라에 출판자가 등록된 사무소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인쇄지 또는 배포지에 관계없이 그 나라에서 출판된 것이라고 간주된다. 둘 이상의 나라에 등록된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1 또는 2 이상의 출판자에 의해서 출판된 출판물은 그것이 출판된 각각의 나라에서 출판된 것으로 간주된다.
 - (마) 구입 또는 무료배포에 의하여 입수할 수가 있는 출판물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종류의 정부출판물, 학회, 정치단체 및 직업단체의 출판물 등으로 한정된 독자를 위한 것이라도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간주된다.

II. 도서출판통계

범위

- 4. 이 권고에서 말하는 도서출판통계는 1 및 3항에 정하는 표지 및 정의에 해당하는 비정기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2항에 제기한 출판물을 제외한다.
- 5. 특히 다음 종류의 출판물은 도서출판통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가) 정부출판물 즉 행정기관 또는 거기에 종속하고 있는 기구가 발행한 출판물, 다만 비밀의 것 또는 부문배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학교 교과서, 즉 1958년 12월 3일에 총회가 채택한 교육통계의 국제적인 표준화에 관한 권고 중에서 정의되어 있는 초등 또는 중등학생용으로 정하여진 도서;
 - (다) 학위논문;
 - (라) 인쇄 즉 이미 출판된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일부를 재차 인쇄한 것으로서 표제 및 별개의 페이지 붙임이 있고 또한 별개의 작품인 것;
 - (마) 시리즈의 일부를 이룬 출판물로서 도서목록상 별개의 단위를 구성하는 것;
 - (바) 그림있는 책:
 - (1) 판화, 미술작품의 복제, 도안 등의 수집이며 페이지 붙임이 있는 완전한 책으로서 작성되어있으며 또한 그 그림에 작품 또는 작자에 관하여 어떠한 단문일지라도 설명이 붙여져 있는 것;
 - (2) 사진첩 또는 일화를 나타내는 그림이 있는 일관한 이야기 형태로 쓰여 있는

그림있는 책 및 소책자;

(3) 아동용 사진첩 및 그림책.

정의

6. 다음의 정의는 기존의 국제협정에 사용되고 있는 정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 권고에서 말하는 도서출판통계를 작성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한다:

(가) 도서관 국내에서 출판되어 또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적어도 49페이지 (표지를 제외) 이상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을 말한다;

(나) 소책자란 어느 일국에서 출판되어 또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적어도 5페이지 이상 48페이지 이하 (표지를 제외)의 인쇄된 비정기 간행물을 말한다;

(다) 초판이란 최초의 저작물 또는 번역물의 최초의 출판물을 말한다;

(라) 재판이란 내용 또는 형식(편집)에 변경이 가해져 앞의 판과 구별되는 출판물을 말한다;

(마) 중판이란 앞의 판의 오식의 정정을 제외하고 내용 또는 형식(편집)에 변경이 가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초의 출판자 이외의 출판자에 의한 중판은 재판으로 간주된다;

(바) 번역서란 원어 이외의 언어로서 작품을 복제한 출판물을 말한다;

(사) 표제란 일책으로 출판되건 수책으로 출판되었건 간에 완결한 체재를 갖추어진 인쇄된 출판물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용어이다.

계상방법

7. 도서출판통계는 출판된 작품의 표제의 수 및 가능한 때에는 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출판부수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없는 나라는 잠정적 조치로서 판매부수 또는 배포부수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수가 있다:

(가) 어떤 작품이 수년간에 걸쳐서 수권(별개의 표제를 갖지 않는다)의 출판물로서 출판되는 경우에는 그 작품은 동일년에 출판되는 수권에는 관계없이 매년 하나의 단위로서 계산된다.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표제보다 오히려 각 권의 통계의 단위로 된다:

(1) 별개의 둘 이상의 작품이 동일한 표지로 출판되어 단일의 출판물을 구성하고있는 경우(1인의 저자의 전집, 제작가의 각본의 선집 등) 별로 분류되는 것으로 한다.

(2) 한 개의 작품이 여러 권으로 출판되고, 각 권이 다른 서명을 갖고 별도의 책을 이룰 경우

8. 리프린트는 서명 수로 계산하지 않으나 11하의 (가)(나)항에 의거 사본 수로 계산된다.

분류

9. 다른 분류법이 작성되고 또 채택될 때까지는 국제십진분류법(UDC)에 따라 또한 23의 주제부분(괄호안의 수자는 UDC의 항목과의 대응을 나타낸다)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분류가 쓰이는 것으로 한다:

1. 일반사항(0); 2. 철학, 심리학(1); 3. 종교, 신학(2); 4. 사회학, 통계학 (30-31); 5. 정치학, 경제학(32-33); 6. 법률, 행정, 복지, 사회구제, 보험(34, 351-354, 36); 7. 군사기술 및 군사학 (355-359); 8. 교육(37); 9. 상업, 통신, 운전(38); 10. 인류학, 풍속습관, 민속학(39); 11. 어학, 언어학(4); 12. 수학 (51); 13. 자연과학(52-59); 14. 의학, 공중위생(61); 15. 공학, 공업, 수공업(62, 66-69); 16. 농업, 임업, 축산업, 수렵,

어업(63); 17. 종교(64); 18. 상사 및 기업관리기술, 통신, 운수(65); 19. 도시계획, 건축, 조형미술, 공예미술, 사진, 음악, 영화, 연극, 라디오, 텔레비전 (70-78, 391-792); 20. 오락, 유희, 경기, 운동(790, 793, 799); 21. 문학(8), (가) 문학사 및 문예비평, (나) 문예작품; 22. 지리, 여행(91); 23. 역사, 전기(92-99)

전기의 주제부문에 이미 분류되고 있는 학교 교과서 및 아동도서는 또는 (가) 학교 교과서 및 (나) 아동도서의 두 개의 추가부분에 개별로 계산되는 것으로 한다.

10. 이들의 각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세분류되는 것으로 한다:

(가) 출판물의 페이지 수에 의한 세분류: (1) 도서, (2) 소책자;

(나) 언어에 의한 세분류: (1) 모든 출판물에 대해서 출판되었을 때의 언어 (2) 번역서에 대해서만이 원어 둘 이상의 언어로 쓰인 작품은 별개의 부분, 즉 '둘 이상의 언어로 쓰인 작품'을 구성한다.

(다) 출판물의 출판순위에 의한 세분류, 11 (가) 및 (나)에 정함에 따라 (1) 초판, (2) 재판

통계표

11. 다음에 명기하는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 통계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며 그 정보는 전 제항에 정하는 정의 및 분류에 합치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정의 및 분류와 국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의 사이의 어떠한 상위에도 주의하는 것으로 한다.

(가) 표제의 총수에 관한 통계는 주제별로 분류하여 또한 각 주제마다에 첫째로 도서와 소책자별로 그리고 다음은 초판과 재판별로 구별한다.

(나) 총출판 부수에 관한 통계는 주제별로 분류하고 또한 각 주제마다와 도서와 소책자별로 구별한다. 다시 될 수 있는 한, 초판(중판을 포함)과 재판(중판을 포함)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표제의 총수에 관한 통계는 출판물의 주제별 및 언어별의 쌍방으로 분류한다.

(라) 총출판 부수에 관한 통계는 출판물의 주제 및 언어별로 분류한다.

(마) 번역서에 관한 통계: 주제별 및 언어별의 쌍방으로 분류된 표제의 총수

(바) 번역서에 관한 통계: 주제별 및 원어별의 쌍방으로 분류된 총출판 부수

III. 정기간행물 통계

범위

12. 이 권고에서 말하는 정기간행물 통계는 제2항에 나오는 출판물을 제외한 제1항 및 제3항에 나오는 표지 및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정부정기간행물, 즉 행정기관 또는 거기에 종속하고 있는 기구가 출판한 법령, 규칙 등의 편집물을 포함하는 출판물, 다만 비밀의 것 또는 부내 배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학술잡지, 즉 대학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조사연구기관 기타 학술 또는 문화단체 등의 출판물;

(다) 직업단체, 노동조합, 정치 또는 스포츠 단체 등의 정기간행물(각 회원에게만 배포되고 있는 것도 포함);

(라) 년 1회 또는 그 이하의 회수로 발행되는 출판물;

(마) 종교교구잡지;

(바) 교내잡지 및 학교신문;

(사) 사내보 즉 공업 또는 상업 혹은 그와 같은 기업의 피고용자 혹은 거래처를

위한 출판물;

(아) 연극,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으로서 문장이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

정의

14. 다음의 정의는 본 권고에 말하는 정기간행물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쓰이는 것으로 한다:

(가) 일반지란 일반공중을 위하여 발행되는 것으로 주로 공공적인 사항, 국제문제, 정치 기타에 관한 시사문제에 대하여 문자로 표현한 정보가 일차적인 으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또 문예 기타의 기사 및 삽화 및 광고를 포함할 수가 있다. 이 정의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일간지나 비일간(가령 일요신문)이거나를 묻지 않고 인쇄에 부처지기 전의 24시 이내에 일어났던 사건을 주로 보도하는 모든 일반지;

(2) 24시간보다 장기간에 걸친 뉴스를 제공하든지 지방적 성격 기타 이유에 의하여 일반정보의 일차적인 근원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비일간의 일반지.

(나) 기타의 정기간행물이란 극히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것 또는 입법, 금융, 상업, 의학, 유행, 운동 등과 같은 전문적인 주제의 연구 및 정보를 주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전문지, 평론지(일반지가 이미 보도한 사실에 대하여 선택, 요약하며 또는 평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사평론지를 포함), 잡지 및 일반지 이외의 모든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본 권고의 제 2항에 명기하는 출판물을 제외한다.

계상방법

15. 정기간행물 통계는 총점수 및 가능한 때에는 발행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16. 정기간행물 총점수의 계상에 있어서는 다음 방법이 채용되는 것으로 한다:

(가) 다음의 것은 별개의 출판물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1) 뉴스 또는 편집내용에 실질적인 상위가 없는 동일 출판물의 지방판 단순한 표제 또는 지방 뉴스면의 상위로서는 그 출판물은 별개의 신문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2) 별개로 판매되지 않고 있는 부록.

(나) 한편 다음 종류에 속하는 출판물은 별개의 출판물로 간주된다:

(1) 뉴스 또는 편집내용이 본판과 실질적으로 다른 지방판;

(2) 별개로 판매되고 있는 부록;

(3) 특별판(일요신문 등과 같은 것);

(4) 일간의 조간과 석간. 단, 별개의 표제를 갖는 것 또는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에 한한다.

(5) 어느 일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동일 출판물의 상위한 언어판.

17. 발행부수는 1일 평균 발생부수, 또는 비일간 출판물의 경우에는 발행할 때마다 평균발행부수로서 표시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숫자는 나라의 내외를 묻지 않고 직접 또는 예약에 의하여 판매한 부수에 정기적으로 무료로 배포하는 부수를 덧붙인 수를 포함, 팔다 남은 부수를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발행부수가 불명인 경우에는 인쇄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분류

18. 정기간행물은 우선 일반지와 기타의 정기간행물의 2종류로 나누는 것으로 한다.

19. 일반 신문: 일반 신문에 관한 통계는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으로

한다:

(가) 언어별 2 이상의 언어로 발행되는 출판물은 별개의 종류에 넣는다.

(나) 횡수별:

- (1) 적어도 주 4회 발행되는 신문, 조간지 및 석간지의 구별도 붙인다;
- (2) 주 3회 또는 그 이하의 발행횟수의 신문, 주 3회, 주 2회, 주 1회 그 이하의 횟수의 것의 구별도 붙인다.

20. 기타 정기간행물: 이 종류에 관한 통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으로 한다.

(가) 언어별: 2 이상의 언어로 발행되는 출판물은 별개의 종류에 넣는다.

(나) 횡수별:

- (1) 적어도 주 4회;
- (2) 주 1회부터 3회까지;
- (3) 월 2회 또는 3회;
- (4) 년 8회에서 12회까지;
- (5) 년 5회에서 7회까지;
- (6) 년 2회에서 4회까지;
- (7) 년 1회 또는 그 이하;
- (8) 불규칙.

(다) 주제별 정기간행물의 국제적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른 분류법이 작성되고 또한 채택되기까지는 국제십진분류법(UDC)에 기하여 또한 23의 주제 부문(괄호 내의 숫자는 UDC의 항목과의 대응을 나타낸다)으로부터 이루어진 다음 분류가 쓰여지는 것으로 한다:

1. 일반사항(0); 2. 철학, 심리학(1); 3. 종교, 신학(2); 4. 사회학, 통계학 (30-31); 5. 정치학, 경제학 (32-33); 6. 법률, 행정, 복지, 사회구제, 보험(34, 351-354,36); 7. 군사기술 및 군사학(355-359); 8. 교육(37); 9. 상업, 통신, 운 수(38); 10. 인류학, 풍속습관, 민속학(39); 11. 어학, 언어학(4); 12. 수학(51); 13. 자연과학(52-59); 14. 의학, 공중위생(61); 15. 공학, 수공업(62, 66-69); 16. 농업, 임업, 축산업, 수렵, 어업(63); 17. 가정(64); 18. 상업 및 기업관리기술, 통신, 운수(65); 19. 도시계획, 건축, 조형미술, 공예미술, 사진, 음악, 영화, 연 극, 라디오, 텔레비전(70-78, 791-792); 20. 오락, 유희, 경기, 운동(790, 793-799); 21. 문학(8); 22. 지리, 여행(91); 23. 역사, 전기(92-99).

(라) 다음 분류에 들어가는 출판물은 전기 23부문에 따라서 계산되지 않고 별개의 분류에 계산되는 것으로 한다:

- (1) 청소년잡지;
- (2) 만화 및 오락잡지;
- (3) 교구잡지;
- (4) 교내잡지 및 학교신문;
- (5) 사보.

통계표

21. 다음에 나오는 종류의 자료를 포함하는 통계를 매년 작성하는 것으로 하며 그 정보는 전 제 항에 정한 정의 및 분류에 될 수 있는 한, 합치하도록 한다. 그러한 정의 및 분류와 국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의 사이에 어떠한 상위에도 주의토록 한다:

(가) 일반신문과 기타 정기간행물: 일수별 및 중요언어별로 분류한 총점수 및 발행 부수의 통계

(나) 기타 정기간행물: 주제부문별 및 횡수별로 분류한 총점수 및 발행 부수의 통계

이상은 파리에서 개최되어 1964년 11월 20일에 폐회를 선언한 제 13차 유네스코의 총회가 정당하게 채택한 권고의 정문이다.